

# 화성비봉 금성백조예미지 기관추천[일반]특별공급 안내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내 B-3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 지상25층 10개동 총 91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시기 : 2025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076.9810	76	76.9810	24.1276	101.1086	37.3098	138.4183	49.5356	442
	084.9967	84	84.9967	26.3262	111.3229	41.1947	152.5176	54.6935	475
	합								917

- ※ 상기 면적은 추후 입주자모집승인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공급면적(㎡) x 0.3025 또는공급면적(㎡) ÷ 3.3058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구분	76		84		합 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5	15	6	18	11	33
	장기복무 제대군인	6	18	6	18	12	3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9	27	9	27	18	54
	중소기업 근로자	12	36	12	36	24	72
	북한이탈주민	5	15	4	12	9	27
	이주대책대상자	0	0	1	0	1	0
	장애인						
	경기도(화성시)	3	9	3	9	6	18
	서울특별시	3	9	2	6	5	15
	인천광역시	3	9	3	9	6	18
총 계		46	138	46	135	92	273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정 및 청약신청방법

구분	일 자(예정)	비 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2.03.31.(목)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건본주택 개관	2022.04.01.(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21-7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2.04.11.(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인터넷 청약 접수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2.04.19.(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정당계약	2022.05.02.(월) ~ 2022.05.06.(금)	건본주택(수원시 권선구 평동 21-7)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data-bbox="264 1854 1509 1973"> <thead> <tr> <th data-bbox="264 1854 576 1912">구분</th> <th data-bbox="576 1854 887 1912">화성시 및 경기도</th> <th data-bbox="887 1854 1198 1912">인천광역시</th> <th data-bbox="1198 1854 1509 1912">서울특별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4 1912 576 1973">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576 1912 887 1973">200만원</td> <td data-bbox="887 1912 1198 1973">250만원</td> <td data-bbox="1198 1912 1509 1973">3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중소기업청 경기 지방 중소기업청 성장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하나원
  - 철거민이주대책대상자 : 한국주택공사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제외 및 계약불가]
- 대상 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기관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 후 당첨 시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업무와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실시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및 제26조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유형별 구분 없이 타입별 배정물량의 300%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화성 비봉지구 B3블록 금성백조예미지' 견본주택 및 안내 서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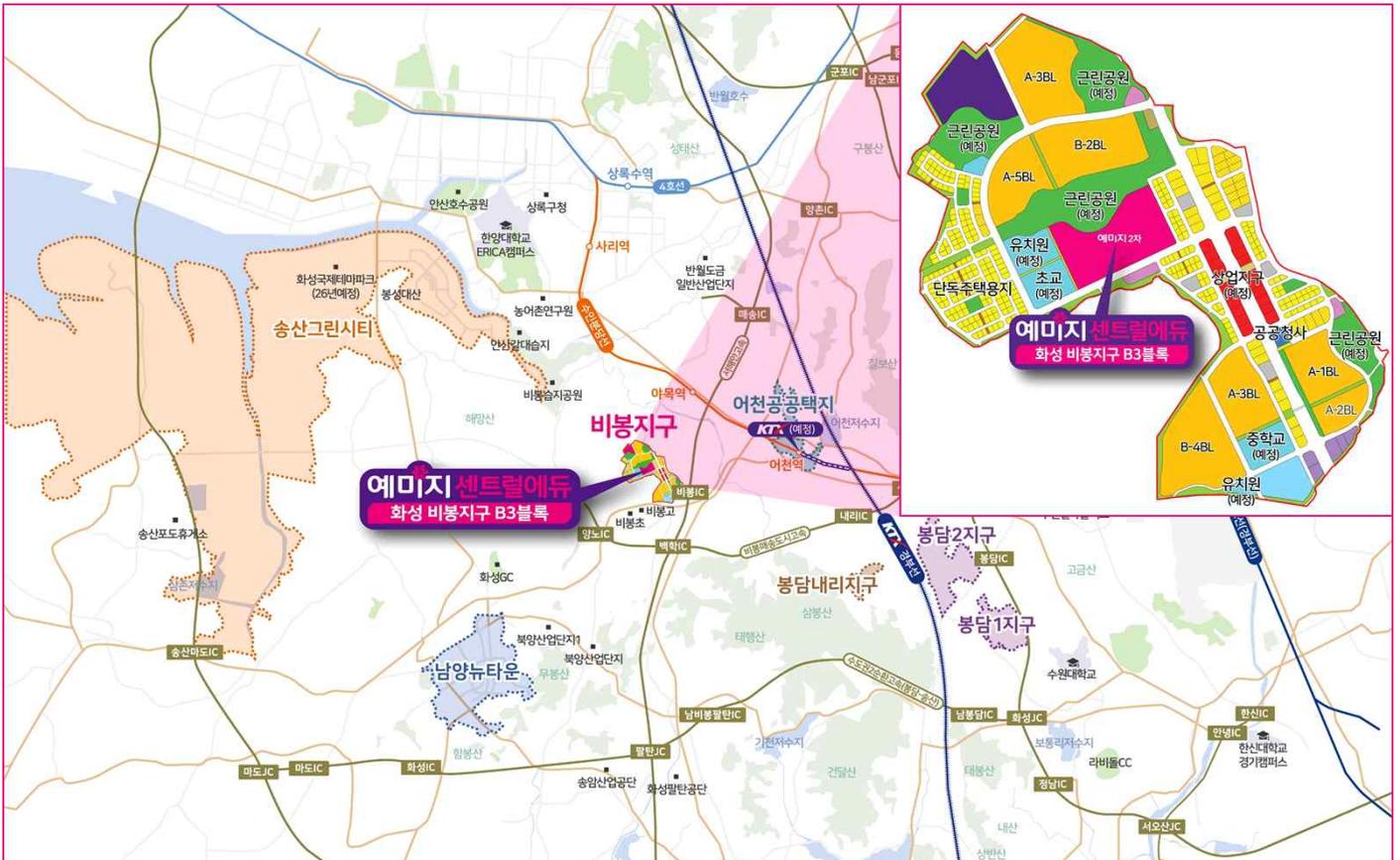
<p>■ 분양문의</p>	<p>1899-7642</p>	
<p>■ 홈페이지</p>	<p>www.bb-yemizi.com</p>	
<p>■ 견본주택</p>	<p>수원시 권선구 평동 21-7번지</p>	

■ 단지투시도



※ 상기 투시도는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 건설되는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위치도



※ 상기 위치도는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관련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